■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[별지 제8호서식] <개정 2014.8.29.>

격리·억류·이동제한·소독·교통차단·출입통제 명령서

제 2023-16 호

<table>
<tr><td rowspan="2">시설</td><td colspan="5">시설명 관내 가금농장, 시설출입차량</td></tr>
<tr><td colspan="5">소재지</td></tr>
<tr><td rowspan="2">소유자
(관리자)</td><td colspan="3">성명</td><td colspan="2">생년월일</td></tr>
<tr><td colspan="3">주소</td><td colspan="2">전화번호</td></tr>
<tr><td rowspan="2">명령의 내용</td><td colspan="3">명령의 구분 출입통제</td><td colspan="2">명령의 이유 가금농장 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유입 방지</td></tr>
<tr><td colspan="2">이행장소 '23. 4. 이후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진으로 설정된 방역지역</td><td>이행기간
'23. 4. 6. ~ 방역지역 해제 시</td><td colspan="2">대상 두수</td></tr>
<tr><td rowspan="3">명령대상</td><td rowspan="2">가축</td><td>축종</td><td>품종</td><td>성별</td><td>연령</td><td>귀표(개체)번호</td><td>특징</td><td>비고</td></tr>
<tr><td></td><td></td><td></td><td></td><td></td><td></td><td></td></tr>
<tr><td>사람</td><td colspan="7">관내 가금농장의 소유자 및 종사자, 시설출입차량의 소유자 및 운전자, 축산 관련 종사자(백신접종팀, 상하차반, 가축진료인력, 컨설팅·인공수정 인력, 동물약품업체 관계자, 계열화사업자 소속 직원, 농장 내 시설공사를 위한 외부인력)</td></tr>
<tr><td>차량</td><td colspan="7">관내 시설출입차량</td></tr>
<tr><td>준수사항</td><td colspan="7">방역지역 내 가금농장(사육시설 50㎡ 초과 농장) 방문 시 아래 출입통제 행정명령을 준수할 것.
○ 동일 법인 등이 소유한 가금농장 간 축산도구 및 기자재 공용 사용 금지
- 2개 이상의 가금농장을 소유한 법인 또는 개인*은 1개 농장(A)에서 사용하는 파레트·합판·왕겨살포기를 해당 법인 또는 개인*이 소유한 다른 농장(A 이외)으로 이동하는 것을 금지
* 동일 세대의 구성원이 소유한 가금농장의 경우를 포함함</td></tr>
</table>

「가축전염병 예방법」 제19조제1항(같은 법 제28조 및 제28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)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격리·억류·이동제한·소독·교통차단·출입통제를 명합니다.

2023년 4월 6일

인천광역시 중구청장

유의사항

「가축전염병 예방법」 제19조제1항(같은 법 제2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)에 따른 격리·억류·이동제한·소독·교통차단·출입통제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57조제4호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.